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이하 “통합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통합조례에서 규율하고 있는 일부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위촉위원 의회 동의 규정 삭제(안 제7조제2항)
- 민간위탁 추진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7조제6항)
-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제7항)
-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위원 위촉 시 여성위원이 위촉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7조제8항)
- 위원 중 위촉위원의 실비보상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

3. 검토의견

이번 개정안은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이하 “통합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통합조례에서 규율하고 있는 일부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2항의 위원위촉의 경우 의회의 동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통합조례의 폐지에 따른 것이며, 제4항 내지 제8항은 폐지된 통합조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신설된 항입니다. 다만 회의록 작성은 통합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사항 등을 감안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의견대비표

개 정 안	수정의견
제7조(민간위탁심사위원회) (<u>신 설</u>) (<u>신 설</u>) ⑦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여성위원의 위촉은 위촉위원의 3분의 1이상 으로 하되, 심의안건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민간위탁심사위원회) <u>⑦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 재한다.</u> <u>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u> <u>2. 출석위원의 성명, 직 및 수</u> <u>3. 부의안건과 그 내용</u> <u>4. 의사</u> <u>5. 표결참가자 성명</u> <u>6.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u> <u>⑧ 회의록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각 기명날 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u> <u>⑨(개정안 제7항과 같음)</u> <u>⑩(개정안 제8과 같음)</u>

신설된 안 제15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안 제15조를 신설하여 위촉 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일비 및 여비(실비보상)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에 관한 규정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개별 위원회마다 이에 관한 규정을 둘 경우, 중복규정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변동될 때마다 관련 개별 위원회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